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범죄의 범위 확대〉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74호)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73호)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11호)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70호)
- 조정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2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	요		1
【박정하의원안】			1
【조계원의원안】			3
【임이자의원안】			4
【강대식의원안】			5
【조경태의원안】			7
II . 검토의견			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8
2. 검토의견			11

I. 개 요

【박정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28.

다. 회부연월일 : 2025. 3.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

「국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
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
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
5조제4항).

【조계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임이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3.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강대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조경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3.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재직 중의 사유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범죄의 범위를 현행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불고지죄 제외)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의 다른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박정하의원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조계원의원안은 범죄의 유형과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범죄를 범한 경우로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이자의원안은 “「형법」 제24장(살인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강대식의원안은 “「형법」 제24장(살인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조경태의원안은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각각 추가하고 있음(각 개정안 제65제4항).

현 행	박정하의원안	조계원의원안	임이자의원안	강대식의원안	조경태의원안
제 65 조 (형 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생 략)	제 65 조 (형 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 65 조 (형 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 65 조 (형 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 65 조 (형 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 65 조 (형 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 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직 중 의 사유로 「 형 법 」	④ ----- ----- 「 형 법 」	④ ----- ----- 「 형 법 」	④ ----- ----- 「 형 법 」	④ ----- ----- 「 형 법 」	④ ----- ----- 「 형 법 」
제2편 제1장 (내 란 의 죄), 제2장 (외 환 의 죄), 「균형 법」 제2편 제1장(반란 의 죄), 제2 장(이 적 의 죄), 「국가 보 안 법 」 (제10조는 제 외 한 다)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 의 형이 확 정된 경우 에는 이미 낸 기여금 의 총액에 「 민 법 」 제 379 조 에 따른 이자 를 가산한	제2편 제1장 (내 란 의 죄), 제2장 (외 환 의 죄), 「균형 법」 제2편 제1장(반란 의 죄), 제2 장(이 적 의 죄), 「국가 보 안 법 」 (제10조는 제 외 한 다), 「 마 약 류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 특정 강력 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 례 법 」 제2조제1항 각 호에 에 규정된 죄 를 지어 금 고 이상의	제2편 제1장 (내 란 의 죄), 제2장 (외 환 의 죄), 「균형 법」 제2편 제1장(반란 의 죄), 제2 장(이 적 의 죄), 「국가 보 안 법 」 (제10조는 제 외 한 다)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 의 형이 확 정된 경우 및 재직 중 의 사유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고 형 이 확정된 경 우-----	제2편 제1장 (내 란 의 죄), 제2장 (외 환 의 죄), 제24장 (살 인 의 죄), 제25 장(상 해 와 폭 행 의 죄), 제38 장(절 도 와 강 도 의 죄), 「균형 법」 제2편 제1장(반란 의 죄), 제2 장(이 적 의 죄), 「국가 보 안 법 」 (제10조는 제 외 한 다)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 의 형이 확	제2편 제1장 (내 란 의 죄), 제2장 (외 환 의 죄), 제24장 (살 인 의 죄), 「균형 법」 제2편 제1장(반란 의 죄), 제2 장(이 적 의 죄), 「국가 보 안 법 」 (제10조는 제 외 한 다), 「 아 동 · 청 소년의 성 보호에 관 한 법 률 」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 의 형이 확 정된 경우-	제2편 제1장 (내 란 의 죄), 제2장 (외 환 의 죄), 제24장 (살 인 의 죄), 「균형 법」 제2편 제1장(반란 의 죄), 제2 장(이 적 의 죄), 「국가 보 안 법 」 (제10조는 제 외 한 다)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 의 형이 확 정된 경우- ----- ----- ----- ----- -----

현행	박정하의원안	조계원의원안	임이자의원안	강대식의원안	조경태의원안
금액을 반환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u>형이 확정</u>	-----	<u>정된 경우</u>	-----	-----
	<u>된 경우</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검토의견

현행법은 형벌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일반적 제도로 범죄의 유형과 종류에 상관 없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1)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그리고,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불고지죄 제외)에 규정된 죄(이하 “반국가범죄”라 함)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들은 재직 중의 사유로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급여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 가중적 급여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법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범죄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비난가능성이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형벌에 따른 급여의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역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적 제도로써 공무원연금제도의 설계나 운영에 대해서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공무원 범죄의 추이 및 현황을 비롯하여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 인식과 법 감정 등 입법적 환경과 그 밖에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개정안들은 재산권의 일종인 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을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현행 대비 확대하는 조치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반국가범죄 이외의 범죄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형벌에 따른 급여수급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침익적 규제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제도상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가중적 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반국가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동 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및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헌정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위해나 공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켜 공익을 저해하는 영향력 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범한 반국가범죄가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엄중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국가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적 급여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형벌에 따른 연금법상의 급여 제한은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 외에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는 불이익 조치로서 급여수급권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비록 헌법이 금지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봄.

아울러, 각 개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바,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강대식의원안 및 조경태의원안은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제24장에 따른 살인의 죄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살인죄(제301조의2)²⁾나 「형법」 제38장에 규

2)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된 강도살인죄(제338조³⁾)와 같이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⁴⁾

임이자의원안은 「형법」 제24장에 규정된 살인의 죄 외에 「형법」 제25장에 규정된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 규정된 절도와 강도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고, 박정하의원안 및 강대식의원안은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으며, 조계원의원안의 경우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에 상관 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 바,

범죄의 종류 및 유형에 따른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선정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⁵⁾ 조계원의원안은 “사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강간살인죄 또는 강도살인죄와 같은 결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범죄 일죄로 처벌하고 살인죄는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함.
- 5) 임이자의원의 경우 살인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수급권이 박탈되나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살인죄와 같은 결합범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강대식의원안 및 조경태의원안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

되는 바, 급여수급권 박탈의 요건으로서 형의 종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들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반국가범죄와 그 밖의 다른 범죄를 구별하여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규제적 조치의 확대 여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국가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취급하여야 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나 부정적 파급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과 종류, 선고형의 수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익적 효과가 큰 불이익 조치의 대상으로서 중대한 범죄의 범주를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공무원의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 연금으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